

「경남소방인재개발원 교육훈련용 소방장비 구매」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 ▶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향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 ▶ 구매대상 물품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물품 규격서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납품가능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물량 (규격및내용)	기초금액(원)			납품기한
		계	추정가격	부가세	
소방인재개발원 교육훈련용 소방장비 구입	20종 32점 (규격서 참조)	89,971,000	81,791,818	8,179,182	계약 후 90일 이내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14.(월) 09: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17.(목) 10: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7.(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의학교육용마네킹**
(물품분류번호 4230150201)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불임 규격서 사양 “**동등 이상**” 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미달 시 검사
불합격 및 지연 배상금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불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토.일요일, 공휴일
불가)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물품계약 일반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라.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거나, 사전 등록절차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pm 3\%$ 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결정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 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2에 따라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 타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하단 표기)에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제출 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규격서,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업체에게 있습니다.**

마. 안내 및 문의처

- 계약 및 사업 내용: 소방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055-818-9416)
- 전자입찰이용방법(장애처리): Call Center(☎ 1588-0800)

2026. 9. 4.

소 방 인 재 개 발 원 분 임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소방인재개발원 (붙임)재무관 귀하